

# 한화B&B와 함께하는 『골목카페 지원사업』 공고

한화B&B와 함께 일하는 재단은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소규모 카페를 대상으로 골목카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한화B&B의 카페 사업 운영 노하우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카페 모델을 육성하고자 하오니,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.

## 1. 지원 자격

### ○ 지원 대상

-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단체 중, 공고일(12월 2일) 기준으로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

- ① 카페 설립(사업자등록 기준) 1년 이상 사업장
- ② 최소 3개월 이상 총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이상 유지

※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(적용제외대상자 제외)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(적용제외대상자 제외)을 받아야 함

※ 취약계층 범위 :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함  
(별첨 참조)

- 개인사업자 신청불가. 다만,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이 조직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단(비영리법인·단체 내 사업단)의 성격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

※ 지원 가능 조직 형태 :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 등

## 2.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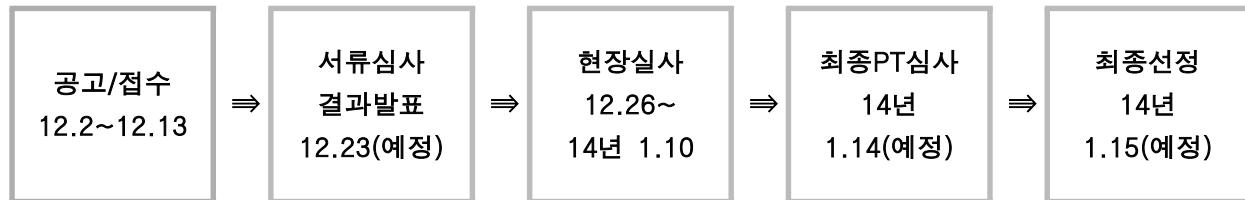
사업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기업당 2천만원 사업비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시설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ex. 노후시설 및 기계 교체, 홍보마케팅, 시제품 개발 등</li><li>- 임대료 및 소모성 비품, 직원 인건비는 신청불가</li></ul></li></ul>
---------	---

※ 최종 심사 후 기업별 지원금 조정 가능성 있음

### 3. 심사기준

심사기준	세부평가 항목	배점
사회적 가치 창출	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	30%
	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성	
	지역사회 공헌 및 이익의 사회적 환원	
경제적 가치 창출	사업아이템의 혁신성	30%
	사업의 시장여건 및 전망	
	수익모형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	
기업가 정신	문제해결능력 : 사회문제 진단 및 논리성	20%
	사업 경험 및 참여 의지	
지원의 필요성	지원의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	20%
	지자체, 학교, 기업 등 외부자원 연계성	

### 4. 심사과정



### 5.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3년 12월 2일(월) ~ 2013년 12월 13일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우편 제출(원본 2부)
  - 1) 1단계 이메일 접수 : work@hamkke.org
  - 2) 2단계 우편 접수 :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접수 등록이 취소됨  
(12월 13일 소인까지 인정)
- 접수처 : (121-819)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-4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 설립지원팀
- 문의 : (재)함께일하는재단 설립지원팀 한정임 (02-330-0760)

## ○ 제출서류

공통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)</li><li>2.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택 1</li><li>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li><li>4.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201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※ 재무제표 : 2013년 6월말 기준(2012년 1월~2013년 6월말) ※ 창업 2년 미만일 경우, 창업시점부터의 회계자료</li><li>5. 직원명부(취약계층 유형 기재, 취약계층 증빙서류)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대표자 이력서 각 1부</li><li>6. 소요예산 산출근거(견적서 등/ 해당경우에만 제출)</li></ol>
사회적경제조직 (해당자에 한함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예비)사회적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서 사본 1부</li><li>2. 마을기업 :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</li><li>3. (사회적)협동조합 : (사회적)협동조합설립인가증 사본 1부</li></ol>

- ※ 이메일 신청본과 우편신청본은 동일하여야 하며,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 제출 바랍니다.
- ※ 접수기간 내의 접수분에 한해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,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서류는 받지 않습니다.
- 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이후 지원조건 미달여부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 6. 선정 후 지원일정

- 선정기업 사업수행기간 : 2014년 1월~ 2014년 5월
- 사업비 지급 및 추후진행일정은 선정기업에 개별안내토록 함

## 별첨.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상 취약계층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간생보호 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